

##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2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오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의 별표 2에 따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